

# 한국과학기술원

## 교수협의회 회칙(개정안)

제정	1991. 1. 24.
개정	1992. 9. 30.
개정	1992. 12. 2.
개정	2004. 2. 26.
개정	2012. 2. 23.

### 제 1 장 총 칙

#### 제 1 조

##### 「명칭」

본 회는 한국과학기술원 교수협의회라 부른다.

#### 제 2 조

##### 「목적」

본 회는 한국과학기술원 (이하 과학기술원) 교수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 
집약하여 반영함으로써 과학기술원의 발전과 교수 권익의 증진에 이바지  
하고자 한다. <개정 2012. 2. 23.>

#### 제 3 조

##### 「대표성」

본 회는 전체교수의 대의기구로서 교수들의 수렴된 의견을 대표한다.

#### 제 4 조

##### 「주사무소의 소재지」

본 협의회의 주사무실은 본원이 위치한 곳에 둔다.

### 제 2 장 회 칙

#### 제 5 조

##### 「구성」

본 회는 과학기술원 전임직 교수로 구성된다.

#### 제 6 조

##### 「권리와 의무」

회원은 본 회의 회칙에 정해진 권리와 의무가 있다.

### 제 3 장 임 원

#### 제 7 조

##### 「임원」

임원은 과학기술원 보직자가 아닌 전임교수로 한다. 본 회는 다음과 같은  
임원을 둔다.

- (1) 회장 1인
- (2) 부회장 1인
- (3) 총무 1인
- (4) 감사 1인
- (5) 회장, 부회장, 총무를 포함한 운영위원 10인 이상.<개정 2012. 2. 23>

#### 제 8 조

##### 「회장」

회장은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본 회를 대표하며, 총회의 의장이  
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
- 제 9 조  
「부회장」  
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, 회장 부재시 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.
- 제 10 조  
「감사」  
감사는 본 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.
- 제 11 조  
「총무」  
총무는 회장단을 보좌한다.
- 제 12 조  
「임원의 선출방법」  
(1) 회장, 감사는 입후보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. 입후보 요건은 회원 5인의 추천을 받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적정수의 후보를 총회에 추천한다. 자기 회장, 감사는 임기 시작 6개월 전에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2. 2. 23.>  
(2) 회장과 감사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1차 투표에서 재선회원 과반수와 재적회원 1/6 이상의 득표자로 선출된다. 1차 투표에서 재선회원 과반수와 재적회원 1/6 이상의 득표를 한 회원이 없을 시에는 최다득표자 2인으로 재차 투표를 실시하여 재선회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올 때 까지 반복한다.  
(3) 운영위원은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 필요한 경우 인준은 서면 및 전자 투표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2. 23.>  
(4) 부회장 및 총무는 회장이 운영위원 중에서 지명한다. <개정 2012. 2. 23.>  
(5) 삭제 <2012. 2. 23.>

- 제 13 조  
「임기」  
(1) 임원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1년으로 한다.  
(2) 회장이나 감사의 결원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로써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.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 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회장이 후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.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  
<개정 2012. 2. 23.>

#### 제 4 장 총 회

- 제 14 조  
「총회의 종류」  
총회는 본 회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.
- 제 15 조  
「총회의 소집」  
(1) 정기총회는 매학기 말로 회장이 소집한다.  
(2)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회원 1/6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  
(3) 총회와 임시총회는 본원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제 16 조  
「의결 정족수」  
(1)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 단, 휴직, 정직, 1개월 이상의 출장 및 파견중인 회원을 재적회원 계산에서 제외된다.

- (2) 총회의 의결은 재석회원 과반수와, 재적회원 1/10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 필요한 경우 서면 및 전자 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2. 23.>
- (3) 서면 및 전자 투표에 의한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참여와 투표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<개정 2012. 2. 23.>

제17조

「기능」

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.

- (1) 학사발전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협의
- (2) 교수권익의 증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협의
- (3) 본 회의 회칙제정 및 개정
- (4) 본 회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(5) 본 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, 운영위원의 인준 <개정 2012. 2. 23.>
- (6) **총장 후보의 선출**
- (7) 기타 교수의 의견 수렴

## 제 5 장 위 원 회

제18조

「위원회」

본 회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,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19조

「운영위원회」

- (1)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제반 운영을 총괄한다.
- (2) 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총무를 포함한 운영위원 전원과 차기 회장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2. 2. 23.>

제20조

「전문위원회」

- (1) 운영위원회는 임무의 특성에 따라 전문위원을 임명하여 각종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단, 총장후보 추천 전문위원회는 다음 조항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방식으로 구성한다.
- (2) 이상의 각종 전문위원회의 임기는 임무의 완수와 함께 최종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만료된다.
- (3) 「총장후보추천위원회」
  - ① 본회에는 특별 전문위원회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.
  - ② 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  - ③ 위원의 선임은 교수 5인의 추천으로 총회에 입후보하여 각 회원이 4명의 후보를 기표하는 방식으로 하여 최다득표자 순으로 7인을 선출한다. 만약 추천된 입후보 수가 7인 이하이면 운영위원회에서 적정수의 후보를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.
  - ④ 위원의 임기는 신임 총장이 취임하는 날로 만료하며 다음 정기총회에서 신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결원이 생길 경우 차점자가 승계하며 보선은 하지 않는다.
  - ⑤ 위원회은 총장 임기 만료 5개월전까지는 총장추천을 위한 업무를 개시하고 2개월전에 그 결과를 교수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⑥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총장후보를 협의회에 추천한다. 총장후보들이 소견발표를 한 후 회원 1인이 1명의 후보를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하여 최다득표자(1순위)를 결정한다. 나머지 후보들에 대하여 회원 1인이 1명의 후보를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하여 최다득표자(2순위)를 결정하여 2인을 소정의 임명기관에 추천한다.

- ⑦ 위원장은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 
발의된 안을 검토, 시행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장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 6 장      분회

제21조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과별 의견 반영을 위한 분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2. 2. 23.>

제22조 삭제 <2012. 2. 23.>

제23조

「문화」

- (1) 분회는 각 학과 회원을 구성원으로 한다.
  - (2) 분회는 분회장을 선출한다.
  - (3) 분회장은 분회의 의견을 수렴 대변하며, 분회원들에게 필요한 소식을 전달한다.

## 제 7 장 임 무

## 제24조 「의견수렴 및 건의」

본회는 제17조의 심의 및 의결된 사항을 총장 및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 이를 검토 반영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.

## 제25조 「대표 파견」

본회는 이사회와 원내의 주요 부서 및 위원회에 3인 이내의 회원을 교수대표로 파견하여 본회의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할 수 있다.

제26조

## 「자료조사 및 보고」

본회의 목적에 따른 제반 활동을 위하여 유관부서에 참고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협의한 결과를 회원에게 보고할 수 있다.

제 8 장 재 정

## 제27조 「회계년도」

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 까지로 한다.

제28조 「재원」

본회의 재원은 회비 및 기타 기부금으로 충당한다.

## 제29조 「결산보고」

회장은 매 회계년도 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제 9 장 회칙개정

## 제30조 「회칙 개정」

본 회칙은 회원의 1/6, 또는 분회장의 2/3, 또는 운영위원 5인 이상의 발의에 총회에서 또는 서면 및 전자 투표에 의한 의결을 거쳐 개정할

수 있다. 단, 총회의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, 서면 및 전자 투표의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참여와 투표 참여자 2/3 이상의 찬성으로 회칙 개정을 의결한다. 단,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회원 1/1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. <개정 2012. 2. 23.>

## 부 칙

1. 본 회의 회칙은 준비위원회에서 초안하여 통합창립총회의 승인을 거쳐 채택된다.
2. 최초의 임원은 회칙이 채택된 후 30일 이내에 선출되며, 그 임기는 1992년 2월말 까지로 한다.
3. 최초의 회계년도는 통합 창립총회 개최일로 부터 이듬해 2월말 까지로 한다.
4. 본 회칙이 채택되고 임원이 선출되면 현 서울 및 대덕 캠퍼스의 교수협의회는 해체된다.
5. 본 회는 학사발전 연구위원회의 소임과 의결사항을 승계한다.
6. 본 회칙이 채택되고 임원이 선출되면 현 학사발전 연구위원회는 해체된다.
7. 본 회칙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. (1992. 9. 30.)
8. 본 회칙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. (1992. 12. 2.)
9. 본 회칙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. (2004. 2. 26.)
10. 본 회칙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. (2012. 2. 23.)